

중국 동물위생감독기구

조사 : aT베이징지사

동물위생감독

동물위생감독은 동물검역 과정에서 동물 사육, 경영과 동물제품생산, 경영 및 기타 동물방역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의 방역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통해 법에 의해 의무를 이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동물위생감독은 일종의 정부관리의 행정행위로서 목적은 규정 수정, 위법행위 등을 처리하는 것이며 동시에 감독기구담당자 및 소속 기관의 법 집행을 감독한다.

1 내용

동물방역사업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

동물 및 동물제품에 대한 검역검사

수의약, 사료와 사료첨가제 및 동물제품 안전실시 감독관리

동물제품에 대한 위생 감독 실시

동물검역증 도장, 로고, 표지에 대한 관리

2 법집행 표식(로고) 규범

동물위생 감독집행사업의 권위성, 규범성과 엄숙성을 수호하고 동물위생감독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 <농업부사무실의동물위생감독집법로고도안가동통지>(농반의[2008]호)에 따라 본규범을 제정한다.

1.각급 동물위생 감독기구 및 파견기관은 법집행표식을 사용하는 유일한 주체임

2.적용범위

집법표식은 각급동물위생감독기구 및 파견기구의 각종 사무장소, 교통공구, 증서, 증건, 깃발, 집법도구와 설비 및 공식 사이트에 사용됨

3.장소, 규격, 요구

3.1 사무장소

고정된 사무장소는 원형법집행표식을 사용하며 ZL102 알루미늄과 순황동재질을 사용

함

- 3.1.1 성급동물위생감독기구는 법집행표식직경이 2.00m로 사용함
- 3.1.2 시급동물위생감독기구는 법집행표식직경이 1.50m로 사용함
- 3.1.3 협급동물위생감독기구는 법집행표식직경이 1.00m로 사용함
- 3.1.4 현급향진주재(구역)의 동물위생검역기구는 법집행표식 직경이 0.80m로 사용함
- 3.1.5 철로, 항공, 수로기관 혹은 인원의 고정장소에 파견된 성급도로 동물검역감독 검사장은 표식직경이 1.00m로 사용함
- 3.1.6 동물검역긴소지점 및 도살장과 격리장에 주재하는 구역 혹은 감독사무실은 법 집행표식직경이0.80m로 사용함
- 3.2 교통도구 교토도구는 원형법집행표식을 사용하고 도배 혹은 스티커제질 자료를 사용하고 도배자료(스티커)는 도로교통관리부분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 3.2.1 감독차량 법집행표시도형은 차앞문 양측에 위치해야 하며 직경은 0.40m 여야 한다
- 3.2.2 집법용 모토등 교통도구 법집행표시도형은 차 주유구 양측에 위치하고 직경은 0.20 m여야 한다
- 3.3 증서증빙서류기록류
- 3.3.1 집법증서, 공작증
- 3.3.1.1 외부: 둔형법집행표시를 사용하고 위치는 증빙자료 외부 중간위치 재질은 알루미늄, 직경은 0.04 m여야 한다
- 3.3.1.2 내부: 둔형법집행표시를 사용하고 위치는 증빙서류 중간위치 지문 수인의 직경은 0.05 m여야 한다
- 3.3.2 집법문서 원형법집행표시를 사용하고 문서의 좌우측에 위치하고 우측에서 0.015 m, 좌측에서 0.015 m 직경은 0.025 ~ 0.040m 여야 한다
- 3.3.3 노트, 검역감독기록부 등
- 3.3.3.1 표지 : 원형법집행표시를 사용하고 중간에 위치하고 자체는 노트표지와 동일하고 입체인쇄와 평면인쇄가 가능하며 직경은 0.03 ~ 0.06m여야 한다
- 3.3.3.2 내부: 채용시 원형법집행표시를 사용해야 하며 지문 수인의 직경은 0.015m 여야 한다
- 3.4 집법도구 설비류 녹음기 녹화기 보이스펜 등 집법도구 등 설비에 집법표시 사용이 필요시 원형집법표시를 사용하고 도배 혹은 스티커재질을 사용하고 직경은 0.01 ~ 0.06m여야 한다
- 3.5 깃발류 원형집법표시를 사용시 깃발중앙에 위치해야 하고 깃발은 실크 혹은 기타 유연재질이어야 하며 칼라는 남색 C100 여야 한다

- 3.5.1 걸어두거나 드는 깃발은 크기가 2.40m×1.60m, 집법표시직경은 0.865m여야 한다
- 3.5.2 사무탁상용 깃발은 크기가 0.21m×0.14m 법집행표시는 직경이0.087m여야 한다
- 3.6 각 급 동물위생감독망 단위내부 자동화사무시스템 등은 원형법집행표시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중국동물감독망을 참조한다
4. 농업부에서 검역표시, 검역증빙 등 기타 규정이 있을시 기타 규정에 따른다

중국동물병역예방제어중심

1 주요직책

수의행정주관부문과 협조하여 유관 법률, 법규 및 정책 초안을 세우고 중대형동물(사람과 가축 공동감염 포함)위생위법 안건 조사 진행을 협조

연구에 의해 중대형 동물병역예방제어 기획, 소멸계획, 응급예안건의 중대동물병역 예방 감독, 제어 및 소멸 작업 지도하고 사람과 가축 공동감염 예방 조치

연구에 의해 동물병역예방치료 규범화를 제의하고 허가에 따라 실시

전국동물병역 종합, 통계분석 및 중대동물병역 예방경고 업무를 담당하고 전국의 동물병역 검사체계를 구축함, 하여 국가급 동물병역정보역 및 변경동물병역 검측점 업무 지도 담당

국가동물병역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 근원 및 긴급지휘 플랫폼 설치 및 관리 담당

전국고병원성동물병원미생물 실험실 자격 인정 및 관련활동 기술, 조건 심사 등 업무 담당

전국동물병원미생물 실험실 생물안전 감독조사 업무 담당, 각급의 진단 실험실 전염병 진단 협조 담당

동물 및 동물병원성 제품 안전검사 및 관련 표준, 표물(标的物)연구제작 담당; 동물 표물 관리, 동물 및 동물제품 근원 작업 담당. 동물진료기구 및 집행수의 관련 작업 담당, 수의집행인원 교육 담당

수의업계 직업기술감정 작업 담당

동물병역기술연구 조직 개설연구 및 국제 교류, 합작 등

2 산하기구

방어응급처

수의 공공위생처

동물전염병예측보고처

동물위생감독지도처

실험실생물안전관리처

동물위생정보처

동물제품안전점검처

수의진단실

중국동물병역예방중심 외 4개 관리부문

가. 3. 행정 업무

나. 주요역할

중국동물역병예방통제센터가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 본 센터는 국가급 수의사 기술지원기관으로서 농업부와 각지방 동물위생감독법률집행기관 및 기술지원기관과의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국제수의사 업무의 중요한 창구이다. 또한 중국의 고병원성 AI등 중대형 동물역병방역통제업무를 강화하며 동물방역업무의 장기적인 체제 구축을 촉진시키며 국가의 공공위생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중국중대동물역병(인간, 축산 공동질병 포함)예방, 통제 및 조치를 책임지는 중국동물역병예방센터에서는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정식적인 현판식을 올렸으며 이는 중국의 동물역병 방역통제기술지원체계 마련에 중대한 조치라 볼 수 있다.

농업부 부부장 연성걸은 현판식 행사에서 중국동물역병예방통제센터의 설립은 농업부

수의사체계 개혁의 중대한 발전이며 중국동물역병 방지통제 기술지원체계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농업부 수의사국, 중국동물역병예방통제센터, 중국수의사약품감사실, 중국동물위생과유형병센터 및 기타 4개 센터 주체로 완전한 국가급동물역병방공관리 및 기술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고도 발표했다.

중국동물역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장중추는 중국동물역병예방통제센터는 중국동물역병의 분석, 중대한 동물역병 예방과 통제, 가축과 가금 제품 품질안전검사 및 동물위생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 역병검사

중국동물역병예방통제센터에서 조직한 중국가축구제역 및 AI 면역현황 검사가 정식으로 시작되어 31개 검사팀이 중국 각지역 지방에 투입, 검사업무를 하고 있다.

본 검사는 중국 31개성(직할시, 자치구), 62개 현, 124개 향(진), 248개 촌, 2,480개 농가, 186개 규모양식장 및 62개 가축도축장에서 진행하며 2006년이후 중국동물역병예방통제센터에서 최초로 대규모 가축면역현황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동물역병예방통제센터 책임자에 의하면 검사는 중점검사지역, 경제 저개발지역, 산간지역, 철새이동지역(候鸟迁徙地区), 가축과 가금 거래 빈번한 지역, 교통발달지역 및 역병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역으로 구분되며 검사계획은 7,750개 혈청샘플을 채취, 지방에 분산해 사육한 가축과 가금의 혈청 채취 수량과 비율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 출처 : 중국위생감독국